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4. 17.(수) 09:34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4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1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속기록과 회의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1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4-2.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견

○ 이효성 위원장

- 국회에서 2018년도 제63차, 제69차 2019년도 제2차 및 제11차 전체회의의 회의록 및 일부 속기록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비공개로 진행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의 관련 회의록 및 속기록은 그간의 선례를 참고하여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발언 위원의 성명 등을 음영처리한 후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을 의결합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2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다>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 외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9-17-076~080)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92조

및 제104호에 따른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현장점검 개요입니다. 먼저 점검 배경입니다. 전체 46개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음란물 유통이 많은 15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15개 사업자입니다. 점검 기간은 '18년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검 내용입니다. 불법음란정보 송수신 제한 조치 의무 위반 여부, 불법음란정보 검색 제한 조치 의무 위반 여부, 불법음란정보 발견 시 차단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 발송 의무 위반 여부,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자료의 2년간 보관 의무 위반 여부 이상 5가지가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점검 대상 15개 사업자 중 5개 사업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5개 항목 중 3개 항목에 대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심인 일반현황입니다.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등록된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이며,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영화, 드라마, 게임, 성인물 등을 유통시킨 사업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기프트엠, 몬스터주식회사, (주)타이디웹, (주)미디어핀, (주)오버마인드 등의 주요 사업 및 종업원 수, 매출액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반 사항입니다. 송수신 제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주)타이디웹, (주)오버마인드는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를 적용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급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성실히 업데이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을 차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장점검 시, 불법음란정보 샘플 업로드 테스트에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검색 제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주)기프트엠, 몬스터주식회사, (주)미디어핀, (주)오버마인드는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금칙어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게시판에서 금칙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음란정보가 검색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현장점검 시, 금칙어 적용 테스트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자료 미보관입니다. (주)타이디웹은 규정상 사업자가 2년간 보관해야 하는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역시 현장점검 결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위법성 판단입니다. 송수신제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주)타이디웹, (주)오버마인드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음란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성실히 업데이트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색제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주)기프트엠, 몬스터주식회사, (주)미디어핀, (주)오버마인드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금칙어 차단 기능이 부분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게시판에서는 금칙어 차단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현장점검 직후 조속히 개선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치하는 등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자료의 미보관입니다. (주)타이디웹이 규정상 2년간 보관해야 하는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전체 피심인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조치(안)입니다. 시정명령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하고자 합니다. 전체 피심인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즉시 중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입니다. (주)타이디웹과 (주)

오버마인드에 대해서는 불법음란정보 송수신 제한 적용 조치를 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입니다. (주)기프트엠, 몬스터주식회사, (주)미디어핀, (주)오버마인드에 대하여는 검색제한 적용
 조치를 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주)타이디웹에 대하여는 기술적 조치 운영·
 관리 실태자료를 보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색제한
 기술적 조치를 위반한 (주)기프트엠, 몬스터주식회사, (주)미디어핀, (주)오버마인드 등 4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법성 정도, 개선조치 등을 검토한 결과 시정명령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입니다. 송수신 제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주)타이디웹과 (주)오버마인드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같은 법 제104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별표 11]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감경 및 가중 사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타이디웹과 (주)오버마인드에 대해
 서는 과태료 각각 7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자료 미보관
 사업자인 (주)타이디웹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3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같은
 법 제104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별표 11]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역시 최근 3년간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감경 및 가중 사유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주)타이디
 웹에 대하여 700만원을 부과합니다.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입니다. (주)타이디웹에 대하여는
 1,400만원 그리고 (주)오버마인드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조치 통보 이후 시정명령 이행점검을 5월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보통 웹하드 사업자로 불리는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저작권 위반물이나 불법음
 란물의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 영상이나 저작물의 송
 수신을 제한하는 필터링과 특정 단어의 검색을 제한하는 금칙어의 차단 그리고 차단시스템의
 로그기록 보관은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요한 규제 조치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당연한 것이므로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작년 10월 제58차 심결 회의에서는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웹하드 사업자 한 곳을
 등록 취소 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와 상시 모니터링 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점검대상 15개 사업자 가운데
 파일노리 (주)선한아이디나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 위디스크는 이미 구축된 양진호 회장이 소유
 했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

- 맞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두 사업자들은 이번에 적발 되지 않았습니까?

○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

- 맞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조사 결과가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년 말에 조사한 것입니다. 현재도 계속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불법음란영상물의 유통과 관련해서 최근 상황이 어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

- 최근에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영상물은 숫자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지속적인 단속 이후에 결과가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지요?

○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

- 예.

○ 허 옥 상임위원

- 그러면 모니터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

- 예, 지금 현장점검을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앞서 허 옥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는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여쭙 보겠습니다. 웹하드 사업자들이 이런 필터링이나 금칙어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곳을 적발 해낸 것인데 숨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웹하드 사업을 소위 음란물이 많이 올라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돈이 생기니까 그것을 방지하거나 고의로 일부러 차단장치를 해제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놓아두면 돈이 생기니까 그런 영리목적으로 혹시 방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한데 조사 결과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

- 예전 양진호 사건 이후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불법음란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와 사업자가 이윤을 배분하는 것이 7:3, 그러니까 게시자보다 사업자가 7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음란물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단속한 사업자들의 경우도 방심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운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음란물 차단하는 필터링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음란물 유통을 많이 하거나 그것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음란물이 많이 유통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주)기프트엠, 몬스터주식회사, (주)미디어핀, (주)오버마인드 4개 회사가 금칙어 차단 기능이 부분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안전 보고에 보면 일부 게시판에서는 금칙어 차단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장점검 직후 조속히 개선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한 것이나 또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인데 이것을 실수로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것이 1개 회사만이 아니고 4개 회사가 공통적으로 부분적으로 금칙어 차단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

- 금칙어 제한 서비스는 필터링 서비스와 달리 필터링 서비스는 방심위에서 차단되어야 하는 음란물의 목록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칙어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운영할 수도 있고 100개, 1,000개를 운영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참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노모'라는 단어가 금칙어로 해서 걸렸는데 해당 사업자의 경우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다른 영화에서 '노모'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 콘텐츠가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적용해야 한다고 지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표 위원님 말씀대로 의도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가 그 숨은 의도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금칙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자율적인 이유 때문에 제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자의 의견들이 일부 게시판에서 검색이 금칙어가 작동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콘텐츠도 접근이 금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일시적인 오류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법률자문도 해 봤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시정명령 정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도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시정명령을 하는 것과 처분하는 원안에는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에게 빠져나갔는지 검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안전을 표기할 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금칙어 조항이나 필터링 조항이 다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엄격하게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게 앞으로 금칙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그다음에 의도적이라는 말은 제외하고 다 동의해 주시면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좋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당연히 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의구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1월에 웹하드 카르텔 근절 종합 대책을 아주 강력하게 수립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는 주로 웹하드 사업자, 그리고 필터링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간 담합, 즉 카르텔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이대로 처리하고, 지난 1월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이 시정명령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1월 발표 이후 웹하드 사업자들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시지요.

○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

- 저희가 1월 14일 정부 합동으로 해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현재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의원님실과 상의해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경찰청과 협력해서 현장 단속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번 4월에도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번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하고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는 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칙어 적용 조치를 예를 들어 실수로 차단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인지는 시스템을 보면 금방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특정시간대에 금칙어 적용이 안 되게 해 놓았다면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할 때 그 부분들은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여기에서 불법음란물이라는 것은 성인용의 합법 영상물과는 구분되는 것이지요?

○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분명히 리벤지 포르노나 불법 도촬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지요?

○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그다음에 한국에서 음란물의 정의상 지나친 묘사가 있어서 불법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SNI

때 문제가 됐듯이 혹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그것을 보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하는 내용들까지도 포함되니까?

○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

- 아닙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으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거쳐 송수신하도록 함으로써 방심위에서 결정된 음란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웹하드 업체에 여러 가지 이런 불법물들 단속을 강화하고, 또 아까 고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웹하드 업체와 관련된 여러 업체들 카르텔을 또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최근에 웹하드 업체가 상당히 사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웹하드 사업이 몰락하고 사양산업이 되어 가는 것 같이 또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

- 웹하드 업체는 음란물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상 콘텐츠들 영화나 다큐 등 이런 것들을 통해 수입을 50% 이상 그쪽에서 얻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OTT 사업이 활성화되고 유튜브를 통해 영상물들이 많이 제공되면서 웹하드 사업자 자체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경향적으로 사양화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

- 예.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전 웹하드 업체는 주로 불법음란물이 많은 수입원이 되어서 호황인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웹하드 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웹하드 업체도 남은 업체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합법적인 성인 영화나 정식 콘텐츠 쪽으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우리가 불법적인 것을 단속해서 웹하드 업체가 잘 안 되는 것은 불법적인 사업을 한 사업체들에 한해서 그런 것이고, 그 외에 정상적인 사업을 한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그런 것들을 최근에 자꾸 우리가 불법적인 것을 단속해서 웹하드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일방적으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됐다, 그래서 그 불법을 단속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우리가 사업을 죽이는 규제를 하는 것 같이 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강원 산불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2019-17-081)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강원 산불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강원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의 수상기에 대해 방송법 제64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신료를 면제한다’입니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의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기타 상가 등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입니다. 면제 기간은 6개월입니다. 관련 법령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방통위가 지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 관련조항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금번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산불 피해민에게 한시적으로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과거 수신료 면제사례와의 일관성, 산불의 피해 규모, 복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6개월로 기간을 정해서 수신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수신료 면제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KBS에 관련 내용을 송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금 이번 고성 산불이 전국이 다 정말 경악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소방차들이 다 동원되어서 전국 소방차 872대가 강원도로 몰려 왔습니다. 그래서 5,600명 인력이 투입되어서 산불을 그래도 다행스럽게 신속하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규모로 산불을 진화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KBS는 재난 주관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성, 속초 산불 대응 최고 수준 3단계가 발령된 지 1시간 10분이 지난 오후 10시 53분에 첫 특보를 방송합니다. 여기에 비해 케이블TV업체 CJ헬로, 영동방송 지역채널이지요. 여기는 KBS보다도 2시간 빨리 특보를 시작하였습니다. 케이블방송보다 재난 주관방송사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BC나 나머지 보도채널은 제가 따져 보니까 MBC는 특보방송을 11시 6분에 시작했고, 보도전문채널 YTN은 10시, 또 연합뉴스 TV도 10시 20분에 이때 특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KBS는 어땠습니까? 잠깐 10여분 했다가 바로 <오늘밤 김제동>이라는 정규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재난방송 하라고 재촉을 하였지만 20여분 동안 그냥 방송을 하였습니다. 지금 모든 채널이 보도전문채널, 또는 MBC, 지역케이블TV까지 다 재난특보를 하고 있는데 주관방송사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 KBS는 취재윤리까지도 저버렸습니다. 고성 산불 현장이라고 중계차를 탔다는 기자가 알고 보니까 강릉 방송국 주변에 중계차를 대고 고성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취재윤리상 있을 수 없지요. 이런 위반까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월 9일 KBS 본사를 항의방문해서 이런 경위를 따지려고 사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끝내 양승모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의원이 낸 보도자료가 보도되었는데 KBS가 지난 2년간 재난방송을 30분 이상 녹장으로 뒤늦게 재난방송을 한 것이 8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 2분 녹장방송은 다 뺐습니다. 50분 이상 지연한 것은 35건입니다. 홍수주의보 발령에도 69분이나 지연된 적이 있고, 포항 지진 때는 48분이나 무려, 근 1시간 가까이 녹장방송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아서 또는 미흡으로 해서 방통위로부터 과태료를 납부한 실적을 봤더니 2017년도에는 3,862만원, 또 2018년도에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 하였습니다. 재난방송을 미흡하게 하거나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야당 일각에서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는데 또 박탈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재난 주관방송사 지정에 관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40조의2에서는 'KBS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 지정된 것이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자격을 거둬들이는 데에도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그런 절차는 없고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재난방송사로 지정되면 어떤 예산 지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지원받았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원칙적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관방송사이기 때문에 기재부나 예산 당국의 입장은 예산 지원은 가급적 하지 않는 방침인데, 기본적으로 '14년도에 15억원 정도 전용 스튜디오 구축하는 것, CCTV 설치하는 데에 지원되었고, '15년도에 25억원, '18년도에 6억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자막 속보 송출 시스템 구축하는데 4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렇게 예산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방송을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재난방송 관련 매뉴얼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자체적으로도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TF를 부사장 주관으로 하여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 관련해서 이것을 방송평가에 포함시켜서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허가를 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차기 재허가 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산불 재난은 다른 자연재해나 풍수해와 다릅니다. 자연재해나 풍수해는 당연히 시시각각 계속 수위가 올라가거나 그 피해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고를 내고 특보를 방송하는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불은 피해가 국지적이고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산불의 피해가 어느 정도 어떻게 큰지를 전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산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산림청에서 판단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실수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판단이 늦게 잘 못한다 하더라도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는 다른 채널이 하고 있으면 KBS는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밤 김제동>이라는 정규프로그램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판단 때문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KBS 쪽에 입장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산림청에서 또는 방통위에서 재난방송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없더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식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들어갔다, 그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다른 방송사는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에 더불어 산불 보도에 대한 내용도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단순히 현장중계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대개 재난방송 특보한 것을 보면 각 방송사들이 활활 타는 산불, 맹렬하게 타오르는 기세, 그 산불 현장에서 스탠드업 하고 중계차를 다 냅니다. 그래서 무슨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정말 제가 입에 오르기 싫은 단어지만 불구경시킨 것입니다. 그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제가 판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산불은 '지금의 풍속과 방향

으로는 30분 뒤에는 어느 마을까지 덮칩니다' 이런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재난 방송 내용을 보면 그냥 스케치에 불과하고 이재민 발 동동 구르는 표정만 전하고 있습니다. 정작 정보가 되는 것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픽으로 보여주면서 '어느 마을로 이렇게 번지고 있다', '30분 뒤에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다 나와서 라디오를 켜고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이는데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매뉴얼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파악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매뉴얼에...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매뉴얼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뉴스시간에 소식을 전하는 것, 2단계는 사태가 좀 더 악화됐을 경우에는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특보를 하는 문제, 3단계는 아예 연속 방송으로 장시간 특보방송을 하는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어느 수준으로 특보방송을 해야 할지는 내부적으로 그 상황팀장과 보도본부장과 상의하고 그다음에 편성본부장과 상의한 다음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심각성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KBS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매뉴얼이라는 것이 그런 단계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프로세스에 관한 것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사 내부에서 방송 내용에 대한 것, 선정적인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취재윤리도 담아내야 하고, 그래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예상할 수 있게끔 대피를 도와야 하는데 라디오방송이 안 되고, 또 장애인들 수어방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방송에 수어방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애인은 어떻게 대피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규정이 있습니까? 수어방송을 꼭 해야 한다, 의무규정이 없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도 매뉴얼에 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들에게도 영어 자막이라도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꼭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대피정보를 재난방송이 줄 수 있어야지, 단순히 스케치로 불이 활활 타오는 것, 물론 경각심은 주지요. 거센 불길을 보면 경각심을 주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재난방송 시스템을 바꾸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KBS 재난 주관방송사와도 협의해서 매뉴얼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히 산불은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 마찬가지로입니다. 풍수해, 자연재해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 그런 협의가 KBS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KBS 내부적으로도 TF를 구성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방통위에서도 전체적으로 재난 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매뉴얼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제가 결론적으로 아까 벽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2년간 재난방송을 소홀히 한 녹장방송을 한 것이 KBS가 얼마나 많습니까? 83건입니다. 또 30분 내지는 50분 이상 지연된 것이 35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주관방송사가 야당으로부터 이념 위주로 방송 프로그램을 내고 이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공영방송, 또 재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김석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실 만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오늘 안전인 강원 산불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 건과 재난방송 건은 분리해서 논의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섞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끝나고도 재난방송과 관련된 간담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강원 산불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는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저희들이 취해 왔던 조치입니다.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재난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는데 민·관이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서 피해를 조기에 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사망 1명, 부상 1명이 발생했고, 지금 현재 이재민이 4개 시·군에 걸쳐 553세대 1,224명이나 됩니다. 또한 재산피해나 산림피해를 보면 산림의 경우 여의도 면적 6배에 이르는 1,757ha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창고, 축사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공영방송사들도 함께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수신료 면제 결정을 하는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면 정부도 그렇고, 특히 공영방송, 또 공적책무를 지고 있는 방송사들은 재난방송의 경우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했다면 미흡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다들 고생했는데 너무 비판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의 존재 이유, 그리고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국민과 또 시청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미흡했다면 미흡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면 됩니다. 그렇다고 특정 방송사가 대표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라,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재난방송 초기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미흡했던 부분들이 왜 그렇게 미흡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안팎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방송사 내부에는 어떤 시스템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재난상황이 발생했으면 자연재해의 경우 태풍, 홍수, 지진은 지금 실시간으로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산불과 같은 경우, 그리고 화재와

같은 경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방송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도 4월 10일, 그리고 4월 12일 지상파 방송 3사, 종편 4사, 보도PP 관계자들을 불러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대해서는 그 역할과 책임에 일정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를 중심으로 해서 지상파방송사들 그리고 종편이나 보도PP 모두가 이 책임으로부터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해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 이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저 역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에게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회재난인데다가 피해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수신료 면제조치의 전례를 감안할 때 면제기간도 6개월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결주문에 동의를 합니다. 수신료 면제 외에 방송통신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대책이나 지원책과 관련하여 방통위가 별도로 검토 중인 사안이 있습니까?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저희가 위원장님과 현장점검을 한번 갔었고, 이번에 강원 산불로 인해서는 영동 극동방송과 그다음에 KBS와 MBC 중계소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요청한 부분들이 방송사 시설을 임시로 간이스튜디오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요청한 바 있는데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해주민들 이외에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 소관부처 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통위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송사들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산불피해 규모들을 봐서 방송발전기금을 정할 때 그런 비율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이나 고삼석 위원님 다 이야기하셨듯이 자연재해와 달리 사회재난의 문제는, 특히 이번 강원 대형 산불의 문제는 우리가 종전과 달랐던 대형 산불이었고, 또 국가적 대응으로 신속히 해서 초기에 진압하는 성과도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냈는데, 특히 재난방송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상황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재난에 있어서 대형 산불이 풍속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관련 피해와 위험지역 전반을 어떻게 제대로 알리고 정보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차후에 이런 재난이 다시 발생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 전반으로 보면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고, 방송사, 특히 KBS 같은 경우 재난 주관 방송사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알리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대응능력, 보강능력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매뉴얼 개선과 전반적인 점검,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은 후속작업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의견 있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수신료 면제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재난방송, 특히 산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 매뉴얼을 만드는데, 또 방송사의 매뉴얼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다음 안건은 비공개 안건이기 때문에 비공개 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강원도 산불재난과 관련해서 수신료 면제 안건을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석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시거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KBS 출신으로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KBS 보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의 부실함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일입니다. 강릉에서 방송하면서 현장이라고 속인 것, 그 발상 자체가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보도의 생명이 신속성과 동시성, 정확성인데 KBS 보도는 이 본질 어느 것에도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내외 방송들이 실시간 생중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제1라디오는 한가하게 의료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통일각 남북정상회담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KBS는 이를 접보하고도 이 중요한 사항을 속보 처리하지 않고 정규 <9시 뉴스>에 특장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지요. 지난 2월에는 KBS <9시 뉴스>가 하루 전 일기예보를 방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도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1일과 12일에는 1TV 낮시간에 <갯벌은 살아있다>라는 프로그램을 이틀 연속 똑같은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KBS 도대체 왜 이리입니까? 나사가 풀린 것도 도를 넘었습니다. 국가기간 방송으로서 또 재난 주관방송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KBS가 이처럼 느슨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가 왜 투입되어야 합니까? KBS 사장 이하 모든 구성원들이 일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KBS 선배 기자 출신으로서 KBS에 애정 어린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KBS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선배로서 잘 지적하신 것에 대해 KBS는 고깝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KBS의 보도와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충언으로 생각하시고 잘 새겨듣고, 프로그램 제작이나 편성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비공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30분 】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 (2019-17-082) (비공개)

【 10시 40분 】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차기 회의는 4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1분 폐회 】